

전기방식위원회 규정

제 1 조(목적)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부식학회(이하 “본회”라고 칭함) 정관 제4조(사업) 및, 제7조(위원회의 설치)에 의거, 본회의 사업중 전기방식 기술과 관련한 조사, 연구, 교육 및 대외 용역 등을 담당하는 전기방식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임무) 전기방식위원회는 본회의 위임사항중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전기방식과 관련한 조사, 연구 사업
2. 전기방식관련 용어의 제정
3. 학계 및 산업체 관련인력의 교육
4. 대외 용역(조사, 설계, 감리, 시험, 법규)
5.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

제 3 조(구성) 전기방식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위원간사 3인 이내의 임원을 두며, 본위원회 활동에 관심있는 본회 회원 및 회원사의 회원 (특별회원 임직원에 한함)으로 구성한다. 전기방식위원장은 본회 회장이 선임하며 위원간사는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.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제 4 조(의무와 권한) 전기방식위원회는 제2조 각항의 사업을 기획, 실시하며, 위원회의 결의 사항 및 경비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 5 조(회의 성원 및 의결) 1.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.

2. 모든 회의의 성원은 재적위원의 과반수로 한다. 단, 불참시에는 위임장으로 출석을 대신할 수 있다.
3. 의결은 투의 결과를 표결로 결정함을

원칙으로 한다. 단, 가부동수인 경우는 위원장에게 일임한다.

제 6 조(재정) 1. 전기방식위원회는 차년도의 사업계획과 그에 필요한 예산안을 수립하여 차년도 예산안편성 이전에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하며, 당해년도 책정된 예산은 위원장이 집행한다.

2. 본 위원회의 예산집행 결과는 본회의 결산 이전에 본회에 보고한다.
3. 사업 종료후의 수입은 모두 본회에 귀속된다.

제 7 조(소위원회 구성) 전기방식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업무별 또는 지역적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업무를 분담시킬 수 있다.

부 칙

1. 본 규정은 1997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2. 본 규정은 2006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.